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05

발의연월일: 2020. 11. 3.

발 의 자:임이자·추경호·김기현

허은아 • 이만희 • 김형동

권명호 · 이주환 · 이종배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연간 4회 이하로 자료를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료의 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산업재해로인한 유족자격,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에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와 자격확인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민원발생 및 보험손실의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공단이 업무수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불편 감소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①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 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 1. 제40조의 요양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 2. 제52조의 휴업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 3. 제57조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 4. 제61조의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 5. 제62조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확인
- 6. 제66조의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 7. 제72조의 직업재활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 8. 제81조의 미지급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수급권자의 유족 여부 확인
- 9. 제91조의3의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및 제91조의4의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확인

-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8조 본문 중 "제127조제1항"을 "제127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1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
	보의 공동이용) ① 공단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
	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
	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
	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제40조의 요양급여 수급권자
	의 생존 여부 확인
	2. 제52조의 휴업급여 수급권자
	의 생존 여부 확인
	3. 제57조의 장해급여 수급권자
	의 생존 여부 확인
	4. 제61조의 간병급여 수급권자
	의 생존 여부 확인
	5. 제62조의 유족급여 수급권자
	의 수급자격 확인
	6. 제66조의 상병보상연금 수급
	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7. 제72조의 직업재활급여 수급

제127조(벌칙) <신 설>

① ~ ③ (생 략)

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 8. 제81조의 미지급 보험급여지급을 위한 수급권자의 유족 여부 확인
- 9. 제91조의3의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및 제 91조의4의 진폐유족연금 수 급권자의 수급자격 확인
-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 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7조(벌칙) ①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u>②</u> ~ <u>④</u> (현행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와 같음)

제1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127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 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 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8조(양벌규정)
<u>제127조제2항</u>
,